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세무1과	1

(2015. 10.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1. 안 건 명

-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16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9(월)

4.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검토보고]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결 대상 :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가부 결정(의결)

나. 출연 필요성

- 1)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비용
- 2) 지방세 연구원 운영 경비 조달

다.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라. 2016년도 출연금(예정액) : 12,664천원

- 산출기초 : 2014년 결산액(보통세-재산세, 등록면허세) 84,429,629천원 * 0.015%

마. 출연금 현황(연도별) (단위: 천원)

회계연도	총예산	출연금	산출기초
2012	7,585	7,585	75,850,000,000원 × 0.01%(2012년까지 출연율)
2013	11,502	11,502	75,447,000,000원 × 0.015% + 184,000원(전년도 정산분)
2014	11,849	11,848	76,749,755,000원 × 0.015% + 336,000원(전년도 정산분)
2015	12,124	12,123	80,820,848,000원 × 0.015%

바. 출연금 추진절차

- 1) 구의회 사전 동의 =>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여부만 구의회 사전 가부 결정(의결)
- 2) 구의회 심의 및 확정 => 2016년도 출연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시 출연금액 및 사업 계획 구의회 최종 결정(의결)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2014.5.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을 예산심의와 함께 일괄 처리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추진사항

- 1) 대 상 :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 2)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3) 출연단체 : 지방세연구원
- 4) 우리 구 가입일자 : 2011. 2. 28. 창립 회원(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 5) 출연이유 : 지방세기본법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함
- 6) 타 자치단체 및 마포구 출연금 비교
 - < 2015년도 기준 >
 - 가)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총액) : 71억 9,851만 9천원
 - 나) 타 자치단체(평균) : 2,962만 3천원/ 출연율 : 0.411%
 - 다) 마포구 : 1,212만 3천원 / 출연율 : 0.168% (단위: 천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
출연금	총합계	7,198,519	7,640,483	▲441,964
	우리구	12,123	11,848	275
	평균	29,623	31,442	▲1,819
출연율	우리구	0.168	0.155	0.013
	평균	0.411	0.411	

※ 전 년도와 비교분석

1) 마포구는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 71억 9,851만 9천원의 0.168%인 1,212만 3천원으로 타 자치단체 0.411%인 2,962만 3천원보다 1,750만원이 적게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 2016년도 마포구 출연금(예상액)은 2015년도 출연금 1,212만 3천원의 4.46%인 54만 1천원이 증가한 12,664천원이 되겠음.

○ 동(同)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2011.4.20일 전국 244개 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 중으로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방세법 법규해석 및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세 업무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연구 등 주요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회원들에게 1) 지방세연구원 연구자료, 월간회보 등 발간 지방세 정보제공 2)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무료이용(회원 가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동(同)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5/10,000(0.015%)를 출연해야 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지방세발전기금 목적에도 부합하고, 2016년도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책자 및 정보서비스 혜택을 계속 받음은 물론 제공받은 지방세 관련 업무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우리 구 지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동)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